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18-63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8년 11월 일
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다문화가족에 대한 해외거주 친정부모 초청과 창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다문화가족 해외거주 친정부모 초청 지원 근거 마련
- 나. 다문화가족 창업 지원(창업교육 등) 근거 마련
- 다.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2019년 본예산 반영 예정 (※ 소요예산 : 35,000천원)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협의사항
  - 1) 입법예고(2018. 9. 19. ~ 2018. 10. 9.)결과 : 의견없음
 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제 3조”를 “제3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반”을 “모든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연계”를 “연계, 창업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9.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거주 부모초청 및 모국방문 사업 지원

제5조제4항 중 “수립시행”을 “수립·시행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「국적법」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강서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<u>제반</u>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·③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다문화</p> |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<br/>-----<br/>--.</p> <p>1.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-----<u>제3조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모</u><br/><u>든</u> -----<br/>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사업) -----</p> |

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, 직업교육·훈련 및 일자리 연계

4. ~ 8. (생략)

<신설>

9. (생략)

제5조(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략)

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) ① ~ ③ (생략)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

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 
----- 연계, 창업 지원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거주 부모초청 및 모국방문 사업 지원

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제5조(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수립·시행 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한 차례만 -----  
-----.

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(생략)

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하고,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 각 호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.

### 4. 작성자

-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(담당자 : 행정7급 최은영 2600-6768)

#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## 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## □ 개정사유

- 다문화가족에 대한 해외거주 친정부모 초청과 창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다문화가족 해외거주 친정부모 초청 지원 근거 마련
- 다문화가족 창업 지원(창업교육 등) 근거 마련

## 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해외거주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.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|        |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|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평가번호   | 2018-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자치법규명  |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<br>일부개정조례안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평가담당부서 | 감사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급      | 행정7급 | 성명           | 김현봉 |
| 입안주무부서 | 여성가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보(조치)일 |      | 2018. 9. 27. |     |
| 관련조문   |  | 검토결과    |      | 조치사항         |     |
| 개정안 전부 |  | 원안 동의   |      | -            |     |



##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|  |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  | 2018A서울강서037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정책명  |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소관부서   | 기관명  | 서울특별시 강서구 |                   |
|  | 부서명  | 여성가족과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| 담당자명   | 최은영       | 전화번호 02-2600-6768 |
|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 | 2018년 9월 19일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주요<br>성별영향평가<br>내용<br>(여성가족과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문화가족에 대한 해외거주 친정부모 초청과 창업 지원 근거 규정 신설</li> <li>○ 법령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조항이 없으며, 성별 특성 반영, 성별 균형 참여 등에 있어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종합 검토 의견<br>(성별영향평가책임관)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|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 균형 참여, 성별통계 반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 | 해당 없음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>2018년 10월 04일</p> <p><b>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</b></p> <p>(담당자/연락번호 : 김화옥/02-2600-6762)</p> <p>여성가족과장 귀하</p> |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